

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
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2. 2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460호로 2022년 1월 2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조문 체계화 및 상위법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 취지에
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에 따른 자구 수정 (안 제9조)
- 나. 이의신청 기간 정비 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21. 12. 30. ~ 2022. 1. 19.)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조문 체계화 및 상위법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2조에서는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이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60일 이내로 개정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“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”에 따라 상위법인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와 달리 규정된 법정민원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법령근거 없이 이의신청 기간(15일)을 정했던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